

전주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38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9.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 12. 12. 접수 제99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2. 3. 23.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3개의 대출금 채권(제1 채권: 2022. 3. 14.자 기준 남은 원금 18,917,899원, 이자 37,847,132원, 제2 채권: 2022. 3. 14.자 기준 남은 원금 24,757,380원, 이자 25,220,725원, 가지급금 390,209원, 제3 채권: 2022. 3. 14.자 기준 남은 원금 14,000,000원, 이자 14,050,509원)을 양수하고, 2022. 5. 16.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22. 12. 1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2. 12. 12. 접수 제99903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혼인 중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C과 피고가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반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각자가 대금의 일부씩을 부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추정을 반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거나 C과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경부터 소액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